

# 중국은행 서울지점 은통선불카드 약관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발행하는 중은통지불상무유한공사(이하 '중은통지불')의 은통선불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양자의 권리, 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 ① 선불카드란 물품구매나 용역의 이용시 고객이 선불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일시불 거래에만 이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 ② 무기명식 선불카드란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발급권면금액별 잔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 제3조 (카드의 신청)

- ① 카드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은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해 카드를 신청하여 은통선불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 구매 시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 설명서>를 참고로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카드 사용 방법을 안내 받습니다.
- ③ 고객은 카드를 받으면 반드시 카드와 카드 발급 영수증을 잘 보관합니다.

## 제4조 (카드의 이용 및 제한)

- ① 카드소지자가 중국의 각종 거래단말기에서 결제 시에는 해당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중국은행, 중은통지불과 정산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된 거래는 해당국가의 금융감독기관과 외환관리기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 ② 카드소지자는 중은통지불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 사정에 따라 일부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은 이자가 없으며, 현금서비스를 할 수 없고, 현금 인출이 불가하며, 은통선불카드의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로는 계좌이체 할 수 없습니다.
- ④ 이 상품은 재충전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 ⑤ 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 취소 시에는 중국은행에서 매출표를 접수한 후 영업일 15일 이내 취소금액만큼 고객의 카드에 다시 입금됩니다.
- ⑥ 카드의 발급매수 및 발급자격은 은행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⑦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불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카드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카드를 수령 시 기존의 선불카드는 즉시 은행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⑧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충전된 금액을 모두 이용한 경우라도 매출취소가 필요할 때에는 카드실물을 일정기간 보관 한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⑨ 전 각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카드 소지자에게 귀속됩니다.

### 제5조 (비밀번호)

①IC칩카드 등 특정상품 이외에 중은통지불은 구매자에게 POS기 카드거래, ATM기 조회 및 기타 서비스의 초기 비밀번호를 제공합니다. 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즉시 중은통지불 인터넷 사이트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비밀번호를 수정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타인이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책임집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비밀번호를 사용한 거래는 중은통지불에서 본인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비밀번호 등 전자 정보를 통해서 처리한 각종 거래는 전자 정보 기록이 이러한 거래의 중요한 근거로 여겨집니다. 카드 소지자가 ARS를 통하여 거래한 업무는 그 해당 기관의 ARS 녹취파일이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 제6조 (사고의 신고)

무기명카드는 소지자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중은통지불은 분실된 카드에 대하여 재발급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카드 소지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 제7조 (비승인 거래에 대한 책임)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선불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카드 관련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지한 경우 등 카드 소지자와 타인이 모의하여 불성실한 행동을 한 경우 및 카드 발급 시 은행이 고객에게 요구하는 자료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카드 소지자에게 있습니다

### 제8조 (카드의 교환, 환불규정)

①은통선불카드는 카드의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카드의 손상은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교환하여줍니다. 카드 교환시 구체적 사항은 중은통지불 규정을 따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의 잔액은 중은통지불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카드를 교환해 줍니다.

②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 즉 은통선불카드 보유자가 은통선불카드의 잔액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사전에 공지한 바에 따라 환급합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권면 금액의 100분의 20이하인 경우

**제9조 (약관)**

① 은행 및 중은통지불은 영업상의 중요한 사유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고객의 주소지, 은행의 지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 1조 (제정일) 이 약관은 2013년 07월 09일 제정한다.

제 2조 (개정일) 이 약관은 2015년 03월 17일 1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19년 02월 21일 2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19년 03월 21일 3차 개정한다.